

## (재)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 및 비상임 임원 공개모집 공고

(재)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역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통상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연기관으로서, 디자인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전문적인 식견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원장 및 선임직 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6년 8월 18일

(재)광주디자인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

### 1 모집분야

- 모집직위 : 원장 및 비상임 임원(선임직 이사, 감사)
- 모집인원 : 총 8명(원장 1, 선임직 이사 6, 감사 1)
- 임용신분 :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, 비상임 임원(이사 및 감사)
- 임 기 : 임용일로부터 2년
  - ※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(입법예고)에 따라 임기 및 연임 적용
- 보수결정
  - 원장 : 연봉은 임용대상자의 능력,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,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, 성과평가에 따라 차년도 연봉 조정
  - 비상임 임원(선임직 이사, 감사) : 보수는 지급하지 않으며, 회의 참석 시 수당 지급

## 2 주요직무 내용

### ○ 임용예정 직위 주요 직무 내용

| 구 분       |        | 직무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원 장       |        | · 법인을 대표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 운영 및 업무 총괄           |
| 비상임<br>임원 | 선임직 이사 | · 이사회에 출석하여 광주디자인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 등 |
|           | 선임직 감사 | · 광주디자인진흥원의 재산 상황 및 결산 감사 등              |

## 3 응모자격 및 결격사유

### ○ 직무수행 요건

| 구 분       |        | 자 격 요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원 장       |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디자인 산업발전에 관한 비전제시 및 실천 능력을 갖춘 자</li> <li>·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을 갖춘 자</li> <li>· 최고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리더십을 갖춘 자</li> <li>· 공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</li> <li>· 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자</li> </ul> |
| 비상임<br>임원 | 선임직 이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디자인 분야 및 관련 기관 경력자</li> <li>·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을 갖춘 자</li> <li>·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충분한 경영능력을 갖춘 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선임직 감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법률과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자<br/>(※ 우대사항 : 공인회계사,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공통사항      |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</li> <li>· (재)광주디자인진흥원 정관 제10조·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○ 결격사유 관련 규정

### 1.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·출연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 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5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집행이 면제된 날
 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# 2. (재)광주디자인진흥원 정관 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

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5.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# 3. (재)광주디자인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13조(임원 후보의 추천)

## 임용 前 원천 배제 기준

1.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함
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<br>병역기피         | ▶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, 신체손상,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<br>▶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<br>▶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<br>세금탈루         | ▶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, 공제를 받아 조세법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<br>▶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·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<br>불법적<br>재산증식  | ▶ 본인 또는 배우자가 <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>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·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<br>위장전입         | ▶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.<br>연구<br>부정행위   | ▶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(박사), 주요 학술지 논문(해외: SCI 및 SSCI급, 국내: 등재지 이상),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·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<br>▶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|
| 6.<br>음주운전         | ▶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<br>▶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.<br>성 관련<br>범죄 등 | ▶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,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2. 위 1.~7.에 열거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, 상습성,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함

3. 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된 비리와 관련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

(세금탈루-재정세제법무분야 등 / 연구부정-교육연구 분야 등 / 성 관련-인권여성분야 등)

##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

○ 원서교부 :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·제출

- (재)광주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(GIDP NEWS ▶ 공고/공지) : [www.gdc.or.kr](http://www.gdc.or.kr)
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(시정소식 ▶ 공지사항) : <https://www.jeonnam-gwangju.go.kr/>

○ 공고기간 : 2026. 8. 18.(화) ~ 2026. 9. 2.(수)

○ 접수기간 : 2026. 8. 24.(월) ~ 2026. 9. 2.(수), 17:00까지.

○ 접수방법 : 이메일 (gidp\_hr@gdc.or.kr)

※ 진흥원이 추구하는 ESG경영 일환으로 환경을 생각하여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.

※ 유의사항

1. 이메일로 응시서류를 제출 하신 후  
원서접수 마감일 2026. 9. 2.(수).18시까지 “응시번호” 회신 메일 확인  
이메일 주소 오기입 등으로 응시서류가 미접수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2. 스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자체 회사 도메인 메일 및 구글 Gmail은 지양해  
주시기를 바라며, 국내 포털메일(네이버, 카카오, 한메일, 다음) 등을 권장합니다.  
▶ 문의처 : 062-611-5014 (이사회 담당)

○ 제출서류

- 1) 지원서, 자기소개서 각 1부(소정양식), 직무수행계획서(‘원장’에 한함, A4, 10매 이내)
- 2)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(소정양식) 1부
- 3) 공공기관 임원 등 예비후보자 자기검증기술서 (소정양식) 1부
- 4) 임용 前 원천 배제 기준(소정양식) 1부
- 5) 최종학력증명서(학위증명서) 원본 1부
- 6) 경력증명서 원본 및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(소지자에 한함)
- 7)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군경력 기재 본)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
- 8) 기본증명서 1부

※ 주민등록초본, 주민등록등본, 기본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나오도록 발급

※ 제출일로부터 3개월 내 발급받은 원본(온라인 발급 포함) 서류로 제출

※ (원장)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 전까지 채용신체검사서(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) 1부를 방문 또는 우편(등기) 제출하여야 함

## 5 전형 방법 및 합격자 발표

○ 전형방법

- 원장 : 1차(서류심사), 2차(면접심사)
- 비상임 임원(선임직 이사, 감사) : 1차(서류심사)

○ 1차 서류심사

- 심사대상 : 응시자 전원
- 심사일/장소 : 2026. 9. 8.(화). / 진흥원 내 회의실
- 심사방법 :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심사
-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: 개별 통지(전화 또는 서면(sms,이메일))
- ※ 위 일정은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## ○ 2차 전형(면접심사)

- 심사대상 : 원장(1차 서류전형 합격자)
- 심사일/장소 : 2026. 9. 11.(금). / 진흥원 내 회의실
- 심사방법 : 개별면접(15분 내외) 방식으로 위원회에서 실시
- 2차 전형 합격자 발표 : 개별 통지(전화 또는 서면(sms,이메일))

※ 위 일정은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※ 2차 면접심사자(원장 후보자)는 기 제출된 직무수행계획서를 별도로 요약하여 서면 또는 프레젠테이션(PT)으로 발표(10분내)하여야 하며, 발표자료 요약본 10부 (A4 3매 이내, USB 1개)를 면접심사 당일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함.

## 6 임용절차

### ○ 최종 후보자 추천

- 서면심사 또는 면접심사 결과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추천

### ○ 최종 합격자 임명

-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장 임명(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원장), 비상임 임원 임명(이사장)

## 7 기타 참고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사회에서 부결될 때는 재공모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서류 검토 후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심사과정에서 별도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.
- 합격자는 개별 통지하며,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.
- 최종 선임 결정 후 신원조회 과정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선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(재)광주디자인진흥원 경영지원팀(062-611-501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